

 금융위원회	<h1>보도자료</h1>			• 미래창조 금융 • 따뜻한 금융 • 특정한 금융
	<b>보도</b>	<b>2016.11.30.(수) 조간</b>	배포	2016.11.29.(화)
<b>책임자</b>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윤상기 팀장(02-2156-9460)	김지웅 사무관(02-2156-9414) 심지원 사무관(02-2156-9437)		

## 제목 : 「제11회 FATF 상호평가 합동대응반」 회의 개최

- ◇ 11.29일(화) 금융정보분석원은 유광열 금융정보분석원장 주재로 「제11회 FATF\* 상호평가 합동대응반」 회의를 개최
  - \* Financial Action Task Force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 한국은 '09년 첫 번째 FATF 상호평가\* 결과, '정규 후속조치'(미비사항 개선 보고서 계속 제출) 대상국으로 분류되었고, '14년 졸업 완료
    - \* 각국의 FATF 국제기준 이행상황을 회원국 상호간에 평가하는 것으로, 약 1년간 서면 검토 및 현지실사를 통해 법규·제도이행 효과를 평가하고, 총회에서 결과 토의
  - '19년 두 번째 상호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기재부, 외교부 등 13개 기관이 참여하는 FATF 상호평가 합동대응반 출범('15.10월)
    - 부정적 상호평가를 받을 경우, 국가신인도 하락, 금융제재, 자국 금융회사에 대한 외국 금융당국의 감독 강화 등 불이익 발생
- ◇ 1년간 25개 부처별 이행과제를 선정하고 이행계획 추진
  - ① 국가의 ML/TF(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 평가 및 공청회 개최(7월)
  - ② 은행 등 업권별 자금세탁위험평가 시스템 구축
  - ③ 테러자금조달 탐지지도(239개) 및 해설집 금융기관 배포 등
- ◇ 개선 필요사항을 토대로 「2017년 합동대응반 운영계획」 확정
  - ① 전자금융업자/대부업자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AML/CFT\* 효과성 측정을 위한 통계시스템 구축 등 부처별 25개 이행과제 중점 추진
    - \* Anti-Money Laundering/Countering Financing of Terrorism

- ②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부문별 국가위험평가 수행
  - ③ 한·중·일 상호평가 워크숍 개최
    - \* 중국 '18년, 일본은 '19년 상호평가 수검 예정
  - ④ 범정부 모의 FATF 상호평가 시행
- ◇ 향후 합동대응반은 모의평가를 통해 발견된 미비점을 중점 개선하는 한편, 관계 부처 고위급의 참여를 확대할 계획

## I. FATF 상호평가 개요 및 합동대응반 운영

### 1. FATF 상호평가 개요

- FATF는 국제기준\* 이행상황을 5~8년 주기로 상호평가(peer review) 하며, 회원국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수검국을 약 1년간\*\* 평가
  - \* FATF가 권고하는 40개 권고사항의 이행 여부 및 제도의 효과성을 평가
  - \*\* ①자료검토(6개월) → ②현지실사(2~3주, 인터뷰) → ③보고서 작성(6~8개월) → ④결과보고·토의(총회) : 약 1년 소요
- 제도이행 부진시 국가신인도 하락, 금융제재, 추가점검 등 불이익
  - 특히 제재대상 등재 시, 해당국 금융회사는 다른 국가에 지점등의 설립이 금지되거나 더 엄격한 감독기준이 적용되는 등 제재조치

#### < FATF 국제기준 이행부진 사례 >

- ◇ 사례① :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FITCH社는 FATF에서 부정적 상호평가를 받은 터키에 대해 신용등급 강등을 경고
- ◇ 사례② : 파나마에 대한 부정적 평가 결과에 따라 미국, EU 주요 21개 은행들이 파나마 지역 은행들과 환거래 계약을 파기
- ◇ 사례③ : '16.2월 FATF는 '테러자금조달 처벌 규정'을 입법하지 않은 브라질에 대해 FATF 회원 자격 박탈을 경고

- 한국은 '09년 FATF 상호평가를 받았으며, 일부 주요 미비점이 발견되어 당시 '정규 후속조치' 대상국으로 분류

\* FATF는 상호평가 후 미비사항을 후속조치(정규<강화), 제재로 분류하여 지속관리하며, 해당국은 일정기간마다 제도개선사항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

- 전제범죄 확대, 고객확인제도 강화 등 주요사항이 개선되어 '14년 총회에서 후속조치 과정 졸업 승인

## 2. FATF 상호평가 합동대응반 운영

-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9년부터 진행될 FATF 상호평가 수검 대비를 위해, '15.10월 상호평가 합동대응반을 구성

- FATF 상호평가에서 제도도입여부 뿐 아니라 효과성(제도 운영 성과)이 중점 점검되므로 평가준비에 최소 3년이 필요\*

\* 국제기준 국내도입방안 마련, 법령 제·개정, 최소 1년간 운영성과 등

- 대응반은 FATF의 40개 권고기준을 국내 제도로 도입하기 위해, 4차례 회의를 통해 기관별 이행과제\*를 도출('15.10월~'16.2월)

\* FATF 권고기준을 국내 제도로 도입하기 위해, 부처별 법령 제·개정 및 제도개선 과제를 선정하고 이행계획을 수립

- '16.4월 13개 부처 25개 이행과제를 확정하고 분기별로 이행 실적을 점검기로 결정

- 이행실적 점검 결과 상당한 제도개선이 있었으나, 일부 제도 및 대응반 운영상 미비점이 발견되어 '17년도 업무계획에 반영 필요

### 《합동대응반 제도 개선 성과》

- ① 은행 등 업권별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평가 시스템 구축 중
- ② 테러자금조달 탐지지표(239개) 및 해설집 금융기관 배포

### ③ 테러관련자 금융거래 제한대상자 추가 지정 고시

### ④ 민·관이 참여한 국가위험평가 공청회를 개최(FIU)

- 1년간 진행된 우리나라 국가위험평가에 관한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개선 방안 논의 및 관계기관 의견 청취

### ※ 국가위험평가(NRA : National Risk Assessment)

- ◇ FATF는 국가 내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ML/TF\*) 위험을 평가하고, 위험도에 비례하여 가용 자원을 배분하도록 권고

\* Money Laundering / Terrorist Financing

- NRA는 국가 ML/TF 방지 정책결정의 근간이 되며, 상호평가에서도 양질의 NRA 시행 및 위험도에 비례한 정책 수립 여부는 매우 중요한 평가요소

- ◇ NRA는 새로운 위험이 출현하고 국내외 환경이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것 등을 감안, 지속적 평가 및 갱신 필요

### 《합동대응반 운영 개선 필요사항》

#### ①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체계적 국가위험평가

\* 현재는 학술기관 용역 수준의 국가위험평가만이 진행된 상태

- ⇒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부문별 국가위험평가 실시 및 국가 자금 세탁방지 정책 수립·조정 기구인 국가위험평가위원회 신설 추진

#### ② 상호평가 이해도 및 중요성 인식 강화

- ⇒ 범정부 모의 FATF 상호평가를 실시하여 각 기관의 미비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평가결과 문서화를 통한 자료 축적

## II. FATF 상호평가 합동대응반 회의 개최 및 향후 운영계획

◇ 합동대응반은 이행과제 중점 추진, 부문별 국가위협평가, 범정부 모의 FATF 상호평가를 포함한 「2017년 운영계획」을 확정

### 1. 제11회 FATF 상호평가 합동대응반 회의

- 11.29일(화) 유광열 금융정보분석원장 주재로 관계 기관이 참여한 「제11회 FATF 상호평가 합동대응반」 회의를 개최
  - 유광열 원장은 약 1년간의 합동대응반 실적을 평가하는 한편, 남은 2년간의 준비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효적으로 수립되어야 함을 강조
  - 특히 금번 회의에서는 타국의 상호평가 대응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벤치마킹 요소를 향후 합동대응반 운영에 반영키로 함
    - \* 중국의 경우 국무위원회 산하 대응조직을 구성하고 자체 모의평가(self-evaluation)를 통해 제도미비점 파악 및 개선계획에 반영
- '17년도에는 부처별 이행과제 추진을 본격화하고, 기관별 국가위협평가(NRA) 및 자체 모의 FATF 상호평가를 시행키로 함

### 2. 향후 FATF 상호평가 합동대응반 운영계획

#### 1 부처별 이행과제 중점 추진

- 전자금융업자 및 대부업자를 통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관련 업권에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법령 개정
  - 연구용역을 통해 전자금융업자/대부업자의 ML/TF 위험을 파악하고 확인된 위험을 관리할 대책을 수립

- FATF가 권고하는 AML/CFT 효과성 측정을 위해 범집행기관, 행정기관, 검사수탁기관이 참여하는 통계데이터 협의체 구성
  - 상호평가방법론, 해외사례 및 국내 관련 데이터 현황분석 등을 통해 수집절차, 조직 등에 대한 상세 추진 계획 수립

#### 2 관계부처 참여 부문별 국가위협평가 실시

- 각 부처 소관 제도의 결함으로 인한 ML/TF 위험을 부처별로 평가하고, 해당 평가를 모두 반영하여 '17년 내 전체 NRA 도출
  - (상반기) 위협평가를 위한 관련 통계자료 수집 및 NRA 관련 FATF 가이드라인, 해외사례 연구 등을 위한 연구모임 수시 진행
  - (하반기) 부처별 위협평가 실시를 통한 전체 NRA 결과 도출
- NRA는 새로운 위험, 환경변화 등을 반영한 지속적 갱신이 필요하므로 국가위협평가 실행·조정 기구를 설립, 운영하기로 함

#### 3 한·중·일 상호평가 합동 워크숍 개최

- '16.10월 FATF 총회에서 韓(금융위)·中(인민은행)·日(재무성) 3국은 자금세탁방지 협의체를 구성하고 향후 지속 공조해나가기로 합의
- 3국 모두 상호평가 수검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상호평가 관련 국제 기준 공동대응, 평가 준비 노하우 공유 등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

\* 중국 '18년, 일본은 '19년 FATF 상호평가 수검 예정

#### 4 범정부 모의 FATF 상호평가 시행

- 각 부처별 소관 제도에 대해 FATF 평가방법론에 따른 모의평가 실시

※ 【평가계획(안)】 서면검토, 보고서 작성, 결과 토의 등 약 5달간 진행

- FATF 상호평가와 유사한 평가환경이 조성되도록, 합동대응반 회의를 통해 평가방법론 및 타국 평가사례 사전 공유 예정

향후 합동대응반은 모의평가를 통해 발견된 미비점을 중점 개선하여 '19년 상호평가 수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해 관계 부처 고위급 및 법집행기관 참여를 확대할 계획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a href="http://www.fsc.go.kr">http://www.fsc.go.kr</a>	금융위원회 대변인 prfsc@korea.kr	 넓게 들었습니다 바르게 알려겠습니다
--	---	--	-----------------------------	--

참고 1. FATF 개요

참고 2. 주요 이행과제 개요

## 참고 1 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 개요

### □ 설립 목적

- UN 협약\* 및 UN 안보리결의(UNSCR) 관련 금융조치(Financial Action)의 이행을 위한 행동기구(Task Force)로 1989년 G7 합의로 설립
- \* (주요 UN협약) 비엔나 협약('88, 마약), 테러자금 조달 억제에 관한 UN협약('99), 팔레르모 협약('00, 조직범죄), 메리다 협약('03, 부패) 등
- 설립 이후 관할 범위를 중대범죄의 자금세탁('96), 테러자금조달('01), WMD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 ('12) 등으로 확대
- \* 북한, 이란의 WMD (Weapon of Mass Destruction) 자금조달에 대한 정밀금융제재 (Targeted Financial Sanction) 내용 포함

### □ 주요 기능

-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AML/CFT)\*분야 국제규범을 제정하고, 각국의 규범 이행현황을 회원국간 상호평가(Peer Review)를 통해 평가·감독
- \* Anti-Money Laundering and Counter Financing Terrorism
- AML/CFT 국제규범 미이행 국가를 선별하고 제재
-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수법 등에 대한 연구, 대응 수단 개발 등

### □ 최근 국제사회에서의 FATF 역할 강화

- 파리테러('15.11월)를 계기로 G20, G7, UN 등 주요국 지도자들이 테러자금조달을 금지하는 FATF 국제기준의 효과적 이행 강조
- 파나마 페이퍼스\*('16.4월)를 계기로 G20, G7, 반부패정상회의에서 실소유주(beneficial ownership)관련 FATF 국제기준의 효과적 이행 요구
- \* Panama Papers :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가 폭로한 파나마 최대 로펌 모색 폰세카가 보유한 약 1,150만건의 비밀문서로서 고위관료, 유명인 등의 조세회피 및 재산은닉 정보 포함

□ 회원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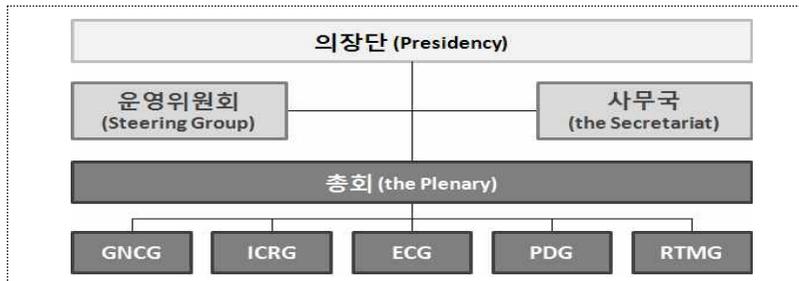
- 정회원(37개), 준회원 (아시아·태평양 지역기구(APG) 등 FATF 산하의 9개 지역기구), 옵서버 (IMF, WB, UN 등 28개 국제기구)로 구성

\* 우리나라는 '09.10월 정회원 가입

< FATF 정회원 현황 >

지역	OECD 국가	非OECD국가	국제기구
유럽 (20)	영국,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스위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러시아	European Commission
미주, 기타(7)	미국,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남아공, 아르헨티나	GCC (Gulf Cooperation Council)
아태 (10)	한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터키	중국, 인도,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계 (37)	26	9	2

□ 조직 구조



GNCG(Global Network Coordination Group), ICRG(International Cooperation Review Group), ECG(Evaluation and Compliance Group), PDG(Policy Development Group), RTMG(Risks, Trends and Methods Group)

□ FATF 의장

- 1년간 부의장직 수입(매년 7월~익년 6월) 후, 1년의 의장직 수행\*
  - \* 신제윤 의장은 '14.7~'15.6 부의장직 수행 후, '15.7~'16.6 의장직 수행
- 의장은 FATF를 대외적으로 대표하며 총회 및 운영위원회 등 주재

□ FATF 총회의 성격

- FATF 총회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FATF 국제기준 및 정책방향과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을 하며 비정치적·기술적 성격\*을 중시함

\* FATF 총회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비정치적·기술적 기구라는 성격에 근거하여 다른 국가들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국제기준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정당성 확보

참고 2 주요 이행과제 개요

과제명	대부업자/전자금융업자에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방지(AML/CFT) 의무부과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ATF 권고사항에 따르면, 대부업자/전자금융업자 등 새로운 형태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할 것을 권고</li> <li>□ 美, 英 등 선진국에서도 전자금융업자 등 새로운 형태의 금융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규제 시행 또는 추진 중</li> </ul>
법률/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 부과근거 신설</li> </ul>
개선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용역을 통해 대부업자/전자금융업자의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을 파악하고 위험 관리 대책 수립</li> </ul>
향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자금세탁 방지의무부과와 관련한 연구 용역 실시</li> <li>□ 연구용역 결과 및 업권 발전 상황을 고려하여 특금법 상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추진</li> </ul>

과제명	<b>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AML/CFT) 통계 시스템 확립</b>
현황 및 문제점	<input type="checkbox"/> FATF는 통계가이드라인을 발표('15.10월) 하여 AML/CFT 관련 자료의 통계 중요성을 강조 <input type="checkbox"/> FATF권고안(R.33)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각국은 AML/CFT 시스템의 효과성과 관련된 종합적인 통계체계를 구축 * AML/CFT시스템의 효과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성과관리 등을 통해 전년 대비 위험이 감소하고 있다는 등의 효과를 입증해야함 <input type="checkbox"/> 상호평가를 위해서는 평가자들에게 FATF 통계가이드라인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고 제공해야함 ⇒ 『AML/CFT 통계시스템』을 위해 받아야 할 통계의 종류, 관계부처 등을 확정할 필요
법률/ 규정	- NRA관련 법령 제정 시 통계시스템 관련 부분 반영 필요
개선 방안	<input type="checkbox"/> FATF 상호평가에 대비하여 'FATF 데이터 및 통계 가이드 라인'에 부합하는 종합적인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input type="checkbox"/> (협의체 구성) 관련 법집행기관, 행정기관, 검사수탁기관이 참여하는 통계데이터 협의체 구성*필요 * 통정부 NRA조직이 만들어 질 경우, NRA 조직과 연계 <input type="checkbox"/> (통계데이터 수집절차 마련) FATF 통계 가이드라인에서 요구하는 통계 데이터를 정의하고 수집절차 정의
향후 계획	<input type="checkbox"/> 통계 데이터 수집 조직 및 협의체 운영 : '16.12월 ~ <input type="checkbox"/> 통계 데이터 수집 정보시스템 구축 :①1단계:'17.6월~'17.12월, ②2단계:'18년.5월~'18년.12월 <input type="checkbox"/> FATF통계 가이드라인에서 요구하는 통계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